

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-21호

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, 「실용신안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「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(생명공학)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(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-16호)을 다음과 같이 변경(연장)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30일

지식재산처장

바이오(생명공학)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

우선심사 대상	생명공학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, 아래 ①, ②를 모두 만족할 것	
	① 생명공학 관련 특허분류(CPC)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< 생명공학 관련 특허분류(CPC) > A01H 1(유전자변형 식물), A01K 67(유전자변형 동물), A01N 63(생물농약), A61K 8(바이오 화장품), 35(구조불명 의약품), 38(펩티드 의약품), 39(항원/항체 의약품), 40(세포면역요법) 47(의약품 담체), 48(유전자치료제), 51(방사성 의약품), A61P 1~43(특정효과 의약품), B01L 3, 7(바이오실험기구), C07H(당류-핵산계 화합물), C07K 1~19(펩티드), C12M 1~99(배양장치), C12N 1~15(미생물, 세포, 효소, 유전공학), C12P 1~41(발효, 생합성), C12Q 1~3(바이오마커, 측정), G01N 27, 33(바이오물질 분석), C40B(조합화학)	
신청가능한 기간	'26. 2. 1. ~ '26. 10. 31.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※ 한시적 시행 후 '26년 11월 연장여부 검토 예정	
우선심사 신청료	특허출원 20만원 /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※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3조제1항제7호	
제출할 서류 (입증할 내용)	○ 공통 제출서류 :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* * ❶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❷ 생명공학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	
	○ 국내생산(준비)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) 공장등록증명서, 물품공급계약서, 납품 확인서, 품질협약서,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	○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) 협약서,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